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0
----------	------

2020년 6월 19일  
교 육 위 원 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5월 21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 1. 제안이유

○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학교체육시설 구축, 학생 체육활동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기초체력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학교체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 확보, 여학생·장애학생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9조).
- 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 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1조).
- 자. 학교체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3조).
- 차.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체육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카.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학교, 학생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90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2017년 OECD가 발표한 「PISA<sup>1)</sup> 2015결과」에 따르면 학교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험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비율(2.9%p)이 낮고, 학교에서 아웃사이더로 여기는 비율(6.7%P), 무단결석 비율(3%P),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비율(2.2%P)도 낮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2016년 미국의 “체육수업시간과 수학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sup>2)</sup> 학교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한계를 키우고 집중력과 자신감을 강화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 체육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학생 건강은 물론 학업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사회성 등 스포츠와 학교체육의 통합적 효과에 주목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1] OECD 주요 선진국의 학교체육교육 비율(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sup>3)</sup>**

구분	한국	OECD 주요 국가 중 PISA 상위권 국가
----	----	--------------------------

1)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교육수준 평가를 위한 시험  
 2) 일주일에 평균 90분 이상 체육수업을 한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남.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평균
초	<b>7</b>	11	11	11	10	14	13	10	<b>11.4</b>
중	<b>8</b>	9	9	11	10	12	12	9	<b>10.2</b>

- 그러나 이러한 체육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입시위주의 지식주입교육에 집중한 나머지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는바,

체육교과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고학년에 대한 체육 수업 시간의 축소 경향, 여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교과 소외,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위한 예산·자원의 부족 등은 학교체육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sup>4)</sup>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육교원 전문성 신장, 자율체육 기반조성, 여학생 체육활성화, 학생건강 체력 증진, 서울형 학생운동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sup>5)</sup>.

- 이와 같이 학교체육교육은 운동욕구 실현 및 체력 증진, 운동 소양 함양 등 교과자체의 목표 달성은 물론 타 교과의 성취를 증진하는 학제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체육활동을 통해 활동적 생활양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3) OECD 발표(2016.10월)

4) 주요 추진 과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20년에는 초 4,5,6학년 확대 적용,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5)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체육건강문화예술과-3071, 2020.2.24.)

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의 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재정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학교체육 내실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자율체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 2)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예산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의 종류를 체육교재, 체력측정, 육상운동, 구기운동, 체조운동, 그 밖의 운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6) 따른 “각급 학교 교구 기준(체육과)”을 고시하여7) 각급 학교의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세부적(학교당, 학년당, 학급당, 실당, 학생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각급 학교 교구 기준(체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9-20호, 2019.12.12.]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과 교육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각급 학교 교구 기준)」에 따른 학교체육 시설 및 교재·교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 비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각급 학교 교구 기준(체육과)					
구분	종류	급별	영역	교구종목	활동예시	최소소요기준	
체육교재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초	공통	줄기줄	육상	학교당 2	
체력측정	초시계, 줄자, 고깔봉, 반환점, .....			배턴	이어달리기	4학생당 1	
육상운동	스타팅블록, 허들, 신호총, .....		건강	라바콘/반환점	육상	학교당 각 15	
				디지털 악력계	근력 측정	학교당 4	
구기운동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		도전	스타팅 블록	단거리달리기	8명당 1개	
				허들	허들	학교당 각 10	
체조운동	리듬체조용 줄, 고무공, 후꾸, .....		경쟁	탱탱볼	피구	1학생당 1	
				축구공	축구, 풋살	2학생당 1	
그 밖의 운동	줄다리기용 줄, 제기, 굴렁쇠, .....		⋮	⋮	⋮	⋮	⋮

※ “각급 학교 교구기준(체육과)”은 각급 학교 중 초등학교 영역별 2개의 교구종목만 예시로 작성하였음

**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체육활동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제5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9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선호 종목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의 개설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교육부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해당 학교의 장은 교내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의 학교스포츠클럽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여학생들의 체육교과 소외, 소극적 참여 등이 학교체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내실 있는 수요조사를 통해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의 체육프로그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의견(안 제11조 ~ 안 제19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2016.12.29.)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는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안에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동 조례안과 함께 발의된 상태입니다.



5)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각종 대회 운영, 학생선수 지원, 연수 운영, 자료 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0조의 학교체육진흥센터는 학교체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체육진흥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6995, 2020.5.2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체육 시설 및 기자재, 체육활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세우는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목적 및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 시책 및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내실화) ① 학교장은 체육교육과정의 수업시수 확보, 성별과 학생·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체육교육 컨설팅, 체육 우수지도 사례 연구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체육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열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다.
  - 1.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체육건강 문화예술과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본다.

제20조(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교육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각종 대회 운영, 학생선수 지원, 연수 운영, 자료 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21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서울

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체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교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